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

Improvement of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System

김상원, 오병주, 유선오, 강석철,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원자력사고는 그 확률은 낮지만 피해의 광역성, 대규모성,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등 고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각국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여 업격책임, 책임의 사업자집중, 강제적 배상조치, 국가의 개입 등을 내용으로 담아 피해자의 구제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원자력손해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동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손해배상법을 개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구축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사업자의 책임 제한액과 배상조치액을 공히 3억SDR 수준으로 하고, 손해의 개념을 확장하며, 적용범위를 베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하고, 면책사유를 축소하며 인적손해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Abstract

A special regime for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is necessary since the ordinary common law is not well suited to deal with the particular problems in the field of nuclear industry.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regime is i) strict liability (other than traditional fault liability), ii) channelling and the exclusive liability of operator, iii) compulsory financial security, iv) limits on liability in amount and in time v) intervention by the state, etc.

In Korea, a revision was made to the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on 16th January, 2001. The revision aimed at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new Vienna Convention on Nuclear Liability (1997) such as i) limit of liability to an amount of 300mil SDR, ii) increase of the level of financial protection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 "Phasing-In" system would be introduced), iii) Extension of the definition "nuclear damage", iv) exte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o EEZ, v) deletion of "natural calamity" from the causes of immunity, vi) extension of prescription period for personal injury to a length of 30 year.

1. 서 -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관 -

가. 의의

원자력손해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오염된 것의 방사선적 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 제2항)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를

확실하게 하고, 강제적 배상조치 등을 통하여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사업자에 대한 원조·보상을 통한 국가의 개입 여지를 규정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제도에 대한 특칙이다.

나. 필요성과 목적

1) 원자력손해의 특성 즉,

환경오염 범위의 광역성, 피해의 대규모성 내지 거액성, 인적손해의 특수성(만발성 등),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일반불법행위법의 특칙을 정한 것으로

2) 원자력산업의 공공성, 재앙적 결과의 가능성은 고려한 재정적 위험분산, 국가의 후견적 개입여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목적은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특징

여타 법 분야와 달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안된 제도로서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법이 제정됨과 아울러 국제협약도 동시에 정비되어 왔다.

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본 구조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 의무를 부과시키며, 국가의 지원 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가) 책임의 성질(엄격책임; 무과실책임)

근대민법의 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하여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면책을 제한하여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유사 사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업자가 면책된다.

나) 책임의 집중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대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이외의 운송인, 용역제공자, 메이커 등에까지 책임을 확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

무한책임제도는 피해자의 칠저한 보호에 주안을 둔 제도로서 한국, 일본, 스위스,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유한책임제도는 사업자의 육성에 주안을 두는 것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펁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과 파리협약은 그 선택을 체약국 국내법에 맡기고 단지 하한선만을 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조치(financial protection)의 강제

가) 목적

원자력사업자의 엄격책임을 재정적으로 보증하고 경상회계 처리로 대규모 배상자금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나) 방법

배상책임보험(상업보험)이 추가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과 함께 손해배상보상계약 또는 공탁의 방법을 병용한다.

다) 배상조치액

각 국가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9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기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으로서 하고 있는 바, 현재 조치액은 60억원이며, 그 비용은 약 6억원 (보험료 약 5.4억원 및 보상료 약 6천만원)정도이다.

3) 국가의 후견적 개입

- 가)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책임주체는 기업이 원칙이지만
 나) 원자력 사고의 경우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자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 또는 보상 (국회의결)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확실하게 하고 원자력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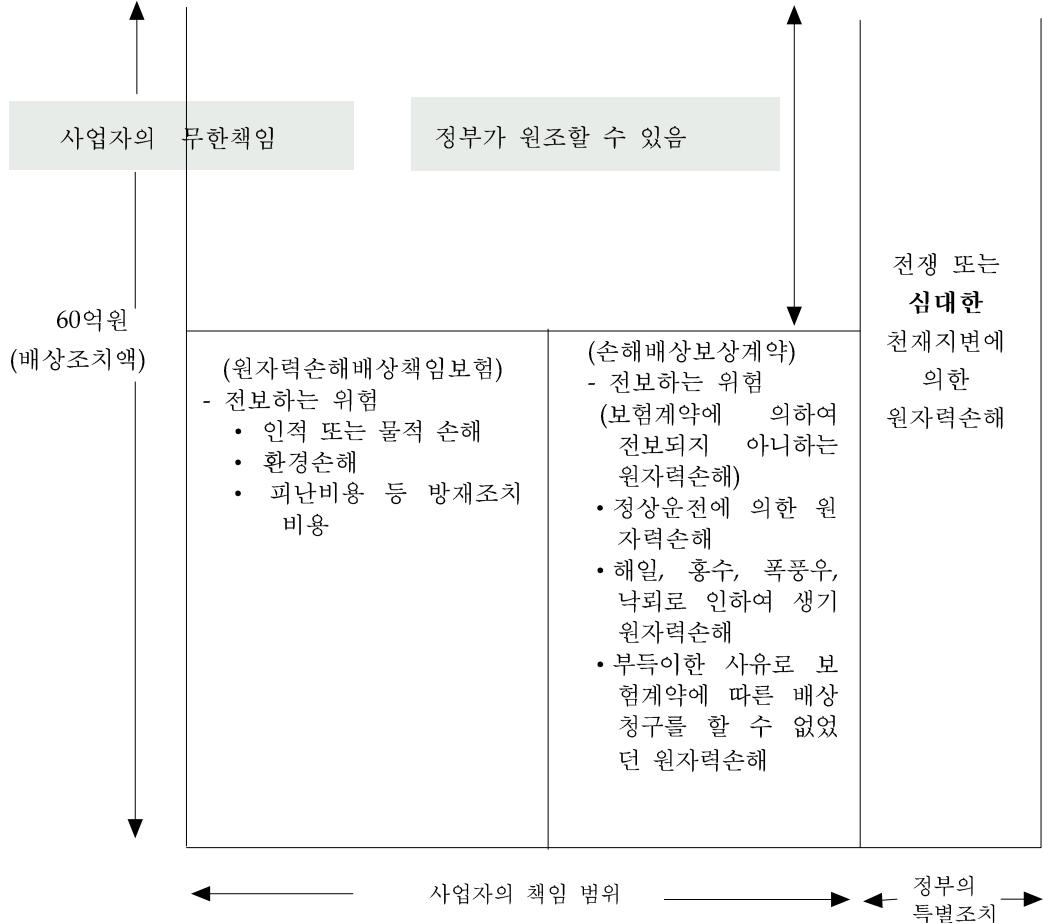


그림 1. 원자력사업자의 책임범위와 책임보험 및 보상계약에 의한 전보

2.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가. 국제협약의 개요

1) 목 적

- 가) 각국의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의 엄격화와 집중,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의무, 정부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 등이 그것이며,
 나) 국경을 넘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처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양대 체제는

파리협약 체제[파리협약 (1960) 및 브뤼셀 보충협약]와 비엔나협약 체제[비엔나협약(1963) 및 보충배상협약]가 있으며, 이 두 체제를 연결하는 Joint Protocol이 있으며,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비교는

표1과 같다.

나. 협약가입 검토

- 1) 원칙적으로는 주변국의 협약가입이나 국내법 개정 동향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2) 그간 논의된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 가) 윤리적 측면에서는 배상조치액 인상으로 피해자 보호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 나) 대한민국의 법령 정책적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에 걸맞는 수준의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수준의 배상 조치액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
 - 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피해자의 지위(오직 섭외사법으로 해결)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OECD 회원국) 제고로 북한경수로 건설과 관련 북한의 배상제도 요구수준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가입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추산

- 1) 현재의 사업자부담은 보험료 및 보상료 합계 약 6억원 (사고시 보험금 호기당 60억원) 수준인 바,
- 2) 협약 가입시 예상 부담에는(3억 SDR 조치시) 보험료 및 보상료가 합계 약 60 ~ 90 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1.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비교

	파리 협약	(개정) 비엔나협약	비 고
채택, 발효	1960년 채택, 1968년 발효	원협약: 1963 채택, 1977 발효	개정의정서 : 서명개방
대상국가	OECD가맹국(현재 14개국)	UN가입국 (32개국)	
보유 원자로	전세계 보유기수의 34%	전세계 보유기수의 6%	
책임의 집중	시설운영자에 집중	시설운영자에 집중	구상권의 제한
면책사유	•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 거대한 자연재해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개정 V/C에서 천재지변 제외
유한책임	• 사고당 500만 SDR한도 • 175백만 SDR까지 시설 소재국 이 보장	• 사고당 3억 SDR • 부족시 공적자금이 보장	개정협약에서 인상함. 종전은 500만금달러*
손해배상조치	• 보험 등 • 상기 유한책임액과 동일	• 보험 등 • 체약국 국내법이 정함	
국가의 지원	배상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능	• 책임제한액과 배상조치액의 차액을 보상	
재판관할권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지국 기타 시설소재지국	(좌 동)	
준거법	재판관할권을 가진 범위의 국내법	(좌 동)	
무차별적용	국적, 주소 여하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인 국내법 적용	(좌 동)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함 (사업자의 책임, 배상조치의무, 정부의 지원·보상) ○ 월경손해에 대한 배상처리의 범위 설정 (재판관할권, 준거법) 		

* 현재가치 약 4,000USS(≒3,000만 SDR) 추산

3.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

가. 배경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정된 지 30년이 경과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이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97년 9월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 및 보충배상협약이 채택, 서명 개방되었으며, 파리협약은 그 개정을 위하여 OECD/NEA 주관으로 각국 전문가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손해배상체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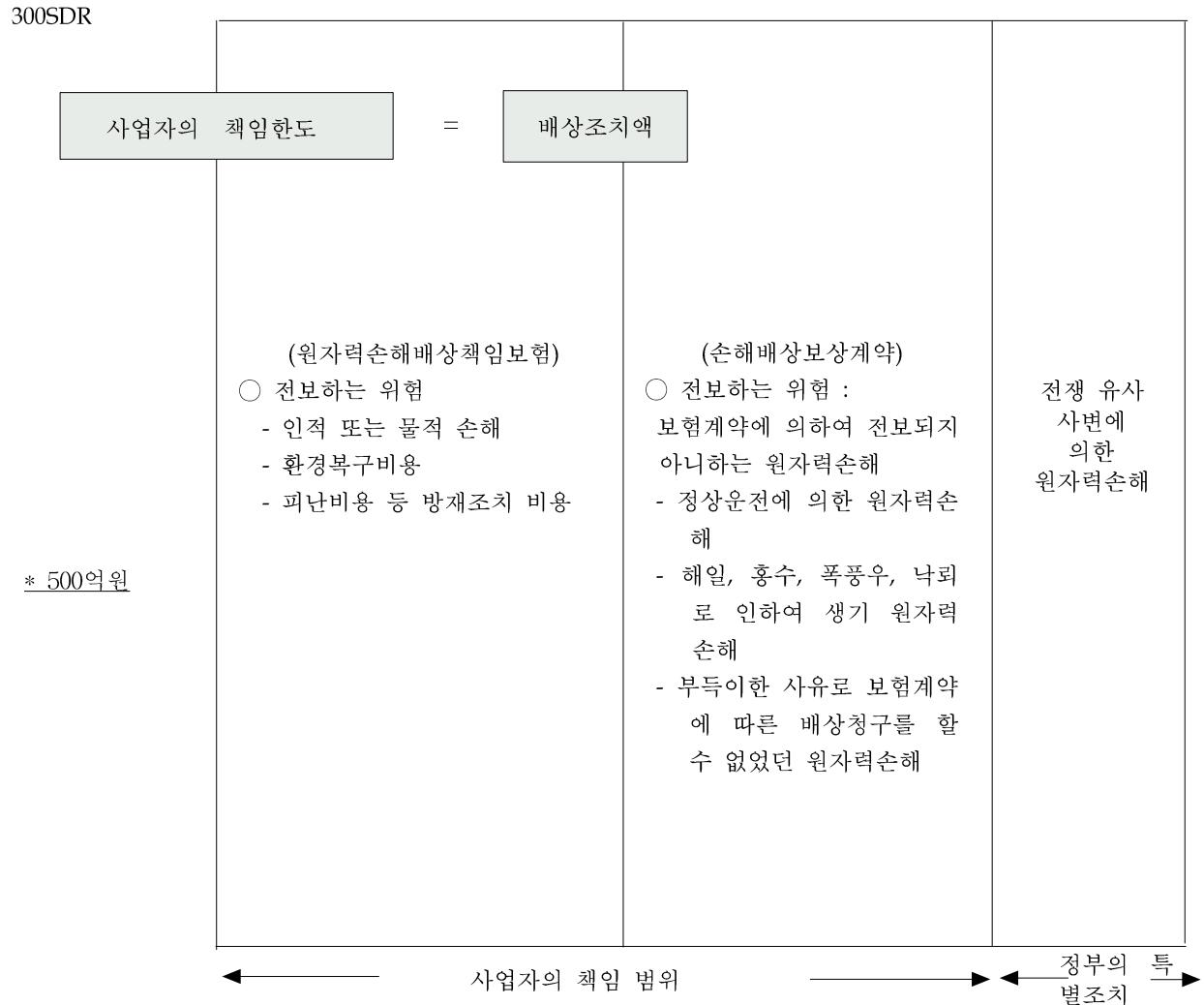
나. 제도개선 추진 현황

1997년 KINS 주관으로 정책연구과제로 개정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수용하여 제도개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외환위기 도래로 개정작업이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다시 정부(안)을 작성하여 200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여 12월에 의결되고, 2001. 1. 16일 공포됨으로써 기존 손해배상법과 개정법을 비교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손해배상법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적용 범위	규정 없음 (한국영토 내에 적용)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상호주의	규정 없음	외국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
손해의 개념	손해 종류 열거 없음	환경손해, 방재 조치비용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열거
외국원자력선, 폐기시설	배상조치의무 없음	배상조치 의무 신설
면책사유	심대한 천재지변 및 전쟁 유사사변	전쟁 유사 사변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반란 등)
배상책임한도	규정 없음 (무한책임)	3억SDR로 제한
배상조치액	90억원 내에서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그 한도에서 과기부장관의 승인액	3억 SDR 상당액 다만, 시행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소멸시효	규정 없음 (민법에 따라 사고로부터 10년)	인적손해에 관하여는 30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조항중 필요한 수정• 제조물책임법 적용제외 등

다.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기본 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배상조치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바, 3억SDR이 되기 이전 시점 (예를들면 그림에서 배상조치액이 500억원인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현행과 같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원조할 수 있음)

4. 결 론 - 남은 문제 -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을 일단 완료한 현재 남은 문제는 우선 하위법령 즉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배상 조치액의 점진적 인상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3억SDR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일정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시행령 개정에 순차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속법령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보다 정치(精致)하게 하여야 할 작업이 남아 있고, 특히 이번 개정에서 논의되다 일단 보류된 "종업원피해"의 포함 여부 등이 여러 입법례 검토와 함께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